

## 【 5 】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3. 21.

제출자 : 양 주 군 수

 개정이유

- 군(郡)이 관장하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대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하여 왔으나,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현행 양주군사무의 읍·면내부위임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행위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이를 폐지하고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 양주군건축신고처리지침(예규)에 의거 읍·면에서 처리해 오던 비허가 대상 건축물(2층이하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 및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신청등 업무처리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적발 및 시정(허가취소, 이행강제금등 부과, 행정대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제외)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사무를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5476호, '97. 9. 9)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사무를 위임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 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과 동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안 제2조 별지 도시과 소관 제2호)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 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수선 (안 제2조 별지 도시과 소관 제3호)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신고 수리(안 제2조 별지 도시과 소관 제4호)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1차 계고처분(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 제외)(안 제2조 별지 도시과 소관 제5호)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와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의 수리(안 제2조 별지 주택과 소관 제2,3호)
-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안 제2조 별지 주택과 소관 제4호)

-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안 제2조 별지 주택과 소관 제5호)
-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안 제2조 별지 주택과 소관 제5호)
- 비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의 작성에 관한 권한(안 제2조 별지 주택과 소관 제7호)
-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시정 지시등 처분(허가처분, 이행 강제금등 부과, 행정 대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제외) (안 제2조 별지 주택과 소관 제8호)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중 “도시과, 주택과 소관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중 주택과소관 위임사무 제2호내지 제5호에 대한 읍·면위임은 회천읍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별지)

## 위 임 사 무 명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 법 규	수임기관
도 시 과	1	○ 토지출입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계획법 제5조	읍·면장
	2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 용도, 동일규모 안에서 개축 및 대 수선과 동호증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 제4호 가독	"
	3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항제4호 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동일용도, 동일 규모 안에서의 개축 및 대수선	동규정 제4조 제4호 나목	"
	4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	동규정 제4조 제4호 다목	"
	5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1차계고처분(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 제외)	동규정 제48조 제48조의2.	"
주 택 과	1	○ 주택사업융자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고지서 전달 및 체납독려	양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읍·면장
	2	○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17조 제4항	회천읍장
	3	○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
	4	○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주택과	5	○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공작물축조 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사용 승인에 관한	건축법 제16조 및 제18조	회천읍장
	6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구역 이외의 기타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m <sup>2</sup>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인 건축물(이하 "비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착공 신고에 관한 권한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읍·면장
	7	○ 비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건축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8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시정지시등 처분 (허가취소, 이행강제금등 부과 및 행정 대집행을 위한 행정처분 제외)	건축법제69조 제1항 제2항	"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고등에 관한 권한

- 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도시과 소관 제2호 관련)
  - 농업에 종사하는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축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싸이로, 창고, 관리용 건축물, 버섯재배사,
    - 양어장 및 부대시설, 임시가설건축물, 꿩·우렁이 등의 사육장, 온실, 작업장 등
  - 제1항 제1호중 바목 : 싸이로
  
- ②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도시과 소관 제3호 관련)
  - 주택 및 부속건축물 : 주택의 중축
  - 제1항 제4호 바목 : 부락공동시설(상여보관소)
  
- ③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내지 제6호(도시과 소관 제4호 관련)
  1. 연면적 85m'이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개·재축 및 대수선
  2. 제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m'이하의 증·개·재축 및 대수선(관리용 건축물의 중축 제외)
  3. 연면적 200m'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m'미만인 창고의 증·개·재축 및 대수선
  4. 죽목의 식재.
  5. 시설 상호간(별표 1)의 용도변경(휴게·일반음식점, 병원, 수퍼마켓, 금융업소, 학원으로 용도변경 제외)
  6.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 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

(별표 1)<sup>1)</sup> <개정 93.12.31>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제 7 조제 1 항제 6 호 다목관련)

1. 수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2.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100제곱미터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이용원 및 미장원
4. 약국
5. 정육점
6. 세탁소
7. 일반목욕장
8. 사진관
9. 목공소
10.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11. 침술원·접골원
12. 동물병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 호 나목(7)의 제조업·수리점(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
14. 취사용가스판매장
15. 장의사
16. 방앗간
17. 독서실
18. 기원
19. 탁구장
20. 당구장
21. 체육도장
22. 표구점
23. 사무소(건축법에 의한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4. 부동산중개업소
25. 금융업소(건축법에 의한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예능계·기술계·지능계학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고수리등에 관한 권한

① 건축법 제9조 (주택과 소관 제2호 관련)

1. 바닥면적 합계가 50m'이내의 중·개·재건축 또는 대수선
2.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참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②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의 수리(주택과 소관 제3호 관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신고수리

③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주택과 소관 제4호 관련)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의 일부를 준용 한다.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제10조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95·12·30>

1. 삭제 <95·12·30>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
4.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5·2·2, 97·9·9>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 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 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착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 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 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착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추 88)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建築法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市・道知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의 建築許可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解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3條 (災害區域에서의 建築制限)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災害가 발생한 市街地에 있어서 都市計劃事業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區域을 지정하여 災害가 발생한 날부터 2月이내의 期間동안 그 區域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災害가 발생한 區域안에 있어서는 그 災害로 인하여 破壞된 建築物의 修繕이나 應急假設建築物의 建築에 관하여 이 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臨時的인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4條 (用途變更) ①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建築物의 用途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群의 用途로 변경(동일한 施設群에 해당하는 用途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用途變更是 申告함으로써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住居施設群
2. 觀覽集會施設群
3. 营業・業務施設群
4. 宿泊施設群
5. 教育施設群
6. 工場・産業施設群
7. 危險物貯藏 및 處理施設群
8. 醫療 및 療養施設群
9. 販賣流通施設群
10. 旅客運送施設群
11.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群

②第3條・第5條・第5條의2・第5條의3・第6條・第8條・第9條・第9條의2・第10條 내지 第13條・第15條・第18條 내지 第20條・第23條・第25條・第26條・第29條・第32條 내지 第34條・第38條 내지 第59條・第59條의2・第59條의3・第60條 내지 第76條 및 第76條의2 내지 第76條의8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群에 속하는 建築物의 用途는 大統領令으로 정한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 9조제 1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12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상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기준을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2·법 제5조의3·법 제6조·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20조 및 법 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0조 내지 제76조·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및 법 제77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은 제 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9·9>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 [별표 16] &lt;개정 97·9·9&gt;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분류(제14조관련)

1. 주거시설군 : 주거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한 것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공관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관람집회시설군 : 각종 문화 · 사회 · 종교 · 오락등의 활동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 음악당 · 서어커스장
  - 나. 회의장 · 공회장 · 예식장
  - 다. 운동경기관람장(관람석이 있는 것에 한한다) ·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자동차경주장 · 체육관(관람석이 있는 것에 한한다)
  - 라. 종교집회장 · 장례식장
  - 마.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어린이회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 · 식물원
3. 영업 · 업무시설군 : 각종 형태의 영업 · 서비스용역 · 업무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음식점,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 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다. 관람석이 없는 체육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 라. 유홍주점 · 유기장 · 무도학원 · 무도장 · 안마시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방송 · 통신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숙박시설군 : 여행객등의 숙박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호텔 · 여관 · 여인숙 · 유스호스텔 · 휴양콘도미니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5. 교육시설군 각급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사회교육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나. 교육원·연수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공장·산업시설군: 각종 물품의 제조·수리와 작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공장 [별표 1 제 4 호 나목(7)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 작업장 · 발전소 · 자동차정비공장 · 폐차장 · 세차장 · 자동차검사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인체에 유해한 각종 물질, 인화하기 쉬운 물질, 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등을 제조·처리·저장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유독물판매소 기타 소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충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의료 및 요양시설군: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관찰을 요하는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전염병원·마약진료소·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판매유통시설군: 상품의 판매·저장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도매시장·소매시장·구판장·공판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여객운송시설군: 각종 교통수단에 의하여 다중의 교통운수에 이용되는 장소 또는 건축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  
 -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터미널·항만여객터미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추 88)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전축법시 행령

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9·9)

(전문개정 95·12·30)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법 제44조·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5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7·9·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홍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

## 인 것

7.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  
이 2년이하인 것
9.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1. 농업용 고정식 온실
-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 5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9>

## 제16조 삭제 &lt;95·12·30&gt;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  
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  
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 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  
다. <개정 94·12·23, 95·12·30>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건축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7·9·9)

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97·9·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법 제9조(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은 제외한다)·법 제13조제1항·법 제16조제3항·법 제18조·법 제25조·법 제26조제1항·법 제30조제4항·법 제31조·법 제34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5조제2항(건축물의 형태·색채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법 제47조·법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70조·법 제73조·법 제74조·법 제76조·법 제78조 및 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3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94·5·28, 95·12·30, 97·9·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총 38)

## 第34編 住宅・建築・道路 第3章 建築 건축법시행령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통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9, 94·12·23, 95·12·30>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둘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

## '97년도 G.B내 행위허가 현황

&lt;楊州郡&gt;

구분	계	형질변경	증·개죽	신죽	용도변경 (대수선)	지번정정	비고
총계	217	31	57	73	18	38	
군	142	28	25	73	16	-	
소계	75	3	32	-	2	38	
주내면	35	2	18	-	-	15	
장홍면	40	1	14	-	2	23	

## 건축신고 및 비허가대상 건축물 민원처리 실태

1. 작성기간 : '97. 1. 1. ~ 12. 31.

### 2. 대상민원

- 비허가대상 건축물은 허가·신고없이 건축법 제16조에 의하여 착공신고된 건축물 및 동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 처리대상 건축물

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역 이외의 기타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m<sup>2</sup>미만이거나 2층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9조 및 같은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가설 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및 동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리 대상 건축물

- 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 지역과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구역에서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sup>2</sup> 이내의 중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
  - 도시계획구역 안의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m<sup>2</sup>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m<sup>2</sup> 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
  -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m<sup>2</sup> 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m<sup>2</sup> 미만인 창고와 연면적이 400m<sup>2</sup>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이 100m<sup>2</sup> 이하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m<sup>2</sup>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단독주택·축사·창고·잠실·기타 농업용 건축물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함)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m<sup>2</sup> 이하인 공장
- 건축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
- 건축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

### 3. 읍·면별 민원처리 현황

#### ○ 읍·면별 민원처리내역

(단위 : 건)

구분 읍면별	계	비허가대상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비고
		착공신고	건축물 대장작성	건축신고	사용승인		
계	2,269	887	743	352	163	124	
회천	661	217	186	144	84	30	
주내	240	114	95	21	9	1	
은현	348	146	125	45	17	15	
남	268	100	77	53	18	20	
광적	304	109	129	32	9	25	
백석	311	150	108	35	14	4	
장흥	137	51	23	22	12	29	

#### ○ 현 민원처리실태

- 비허가대상건축물 민원업무는 읍·면장이 처리
- 신고대상건축물 민원업무는 회천읍은 읍장이 처리하고 기타면은 군에서 민원처리
- G.B내 건축 민원은 민원처리내역에서 제외

## 【 6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3. 21.

제출자 : 양 주 군 수

### □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방세제 지원 방안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조례중 자동차세 감면대상 물건에 대한 차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1~6급)와 장애인 (1~3급)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물건을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한정한 것을 승합자동차(정원 15인 이하)와 화물자동차(1톤 이하)까지 확대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2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제4호)

##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를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1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 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배우자 또 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 는 자동차(배기량2,000씨씨이하인 승 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 하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 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 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 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 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 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매 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증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 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 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배우자 또 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 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 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 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 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 세를 면제한다.</p> <p>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u>승합자동차</u>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적재적량 1톤이하인 <u>화물자동차</u>
( 신설 )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사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장애인소유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 장애인 의 경우는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 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는 <u>자동차(배기량2,000씨 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 차 1대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자동차 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p> <p>( 신 설 )</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 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 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p>	<p><u>된 자동차</u></p> <p>제4조(장애인소유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u>자동차로서 다음 각호</u> 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 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 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u>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u> <u>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u> <u>3.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u> <u>4. 이륜자동차</u>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 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u>  <u>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u>  <u>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p> <p>1 ~ 3 (생략)  <u>( 신설 )</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된 자동차</p>

## “문서유통량 20% 줄이기”

## 경 기 도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0331) 249-4153 / 당당자 최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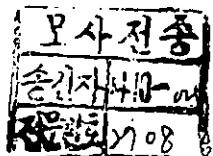
문서번호 세정 13400 - 277

시행일자 1998. 2. 18. (년)

(경유)

발송 받는곳 참조

참조



선 결		~ 6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8. 2. 18.	
수 번호		7818 (112)	결 재 · 공 람
처 리 과			
당 당 자		가동자	

## 제목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통보

1. 내무부 세제 13400-37('98.2.12)호 및 13400-41('98.2.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 결정 제반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라며,

3. 시·군에서 감면조례개정시 표준안과 달리 조례내용을 규정할 경우(단순자구 수정은 제외)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덧붙임 :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

## 경 기 도 지

내 무 국 장 전 결



받는곳 : 러【세정(세무, 재무, 부과, 징수)과장】

## 경기도○○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경기도○○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뚜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시·군세)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 국가유공자들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삼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 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 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 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 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 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들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삼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 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하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 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 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 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3. (생 락)</p> <p>&lt;신 설&gt;</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 양주군군세감면조례

[1994. 12. 29]  
[조례 제1517호]

개정 1995. 10. 5 조례 제1546호

" 1996. 2. 12 조례 제1555호

" 1996. 7. 8 조례 제1572호

" 1997. 8. 11 조례 제1639호

전문개정 1997. 12. 31 조례 제1660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 제6편 재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감면조례

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 3 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동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4 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 5 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6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